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- 관련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-397(2023.8.9.)호
- 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절차 명확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적시 공급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확보하고자 「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동 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대표누리집(www.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법령정보 → 제개정고시등)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(제2023-57호) 1부
2. 「희소·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」 전문 (제2023-57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,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,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장

주무관 이규이 사무관 김세중 의료기기정책 전결 2023.8.31.
과장 주선태

협조자

시행 의료기기정책과-6191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
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772 팩스번호 043-719-3750 / kyoui9225@korea.kr / 대국민 공개